

부패방지정책

제1조 목적

- ① 콜마홀딩스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(이하 “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- ② 회사의 임직원은 「형법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미국 「해외부패방지법(Foreign Corrupt Practices Act)」, 영국 「뇌물방지법(UK Bribery Act 2010)」, 「OECD 부패방지협약」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조 정의

- ① “부패리스크”란 부패행위 및 부패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를 말한다.
- ② “이해관계자”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.
- ③ “비즈니스 관계자”란 회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.
- ④ “부정한 사업상 이익”이란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.
- ⑤ “금품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1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 2.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 3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
- ⑥ “주관부서”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<신설 2022. 12. 26.>

제3조 적용 범위

- ① 본 정책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(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. 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에 적용된다.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,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② 본 정책은 모든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.

제4조 관리 및 점검

- ① 회사는 내부통제, 준법 프로그램이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고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한다.
- ②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패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제5조 금품등의 제공

- ①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·제안·요구해서는 안 된다. 임직원은 금품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 내 정해진 승인 및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, 특정 금품등의 제공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.>
-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등을 제공 또는 요청받았을 경우,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다. 거절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메시지가 오해나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하며, 즉시 주관부서에 그러한 제공 또는 요청이 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.>

제6조 기부 및 협찬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부 또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나 정치적 기부 은폐를 목적으로 기부나 협찬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.
- ③ 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「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」 제4조를 준용한다.

제7조 비즈니스 관계자

-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체와의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명시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.
- ③ 임직원은 비즈니스관계자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면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, 주관부서는 부패리스크를 검토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<개정 2022. 12. 26.>

제8조 장부와 기록

회사는 모든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 교육

- ①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, 부패방지에 대한 실행 의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한다.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, 발견된 부패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, 사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, 임직원은 해당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.
- ③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,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 12. 26.>

제10조 신고 및 보복 금지

-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신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.
- ②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경우,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 임직원은 신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내부신고제도(V-GMP, 우편, 홈페이지 제보코너 등)를 이용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2. 26.>
- ③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,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1조 제재조치

임직원이 본 정책·사내 규정 또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,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, 해당 임직원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시행일

- ① 이 정책은 2021 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정책은 2022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정책은 2025 년 1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해석<개정 2022. 12. 26.>

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